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3 선고 2020가단5160463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고1. B

2.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 종결2020. 10. 6.

판결 선고2020. 10. 13.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3,788,4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4.부터 2019. 5. 2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20. 8. 29.까지 연 8.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629,000원에서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B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피고 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이준구

별지